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399 제출연월일: 2024. 8. 30.

부

제 출 자:정

제안이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별로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부과의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상향하고,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며,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을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함.

- 가. 월별 성실납세신고 제도의 신설(안 제9조제4항 및 제38조의5 신설)
 - 1) 성실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사 등이 작성한확인서를 첨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성실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2) 세관장은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를 한 물품의 세액을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할 수 있도록 함.
- 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연장 (안 제21조)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종전에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7년으로 연장함.
- 다. 부정행위를 통한 과소신고의 가산세율 상향(안 제42조제2항)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부족세액의 1 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 라.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

(안 제76조제3항)

종전에는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다른 개발도상국보다 우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해서도 해당 관세를 적용하도록 함.

마. 수출·수입이 금지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확대(안 제235조 제1항제7호 신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이 해외로 유 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

- 바.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 마련(안 제254조제2항·제7항· 제8항)
 - 1)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 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통신판매업자 등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2) 해당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3) 통신판매업자 등의 등록은 폐업한 경우, 사망한 경우 및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사. 과세자료의 제출기관 추가(안 제264조의2제7호 신설)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아. 가격조작죄의 벌금형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270조의2제2호)

종전에는 가격조작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과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 또는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을 추가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금액 이하로 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로, "신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을 "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을 "다음 각 호의"로, "10년"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 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의5를 제38조의6으로 하고,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조의5(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다시 한꺼번에 납세신고(이하 이 조,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제1항에서 "성실납세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사등이 수입신고서에 적힌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성실납세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관장에게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세

신고를 한 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납세신고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를 "제38조 및 제38조의5"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성실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납세신고한 내용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를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 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100분의 40"을 각각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개발도상국"을 "개발도상국[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25년 4월 1일 전에 제외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 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 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다. 통관우체국

제111조제2항제5호 중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입항하였을"을 "입항하려는"으로, "지체 없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 한다.

제140조제5항 중 "제한"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한다.

제16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중견기업"을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177조제1항제1호나목 중 "기간"을 "기간."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6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제209조제1항 중 "매각하려면"을 "매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따라"로 한다.

제2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3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제235조의 제목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제2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지식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제246조제2항 중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검사방법, 검사 장비·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 다.

제248조제1항 단서 중 "신고인"을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 출입신고·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자(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 매업자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 3.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 •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입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방법·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 ⑥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1. 수출입신고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 항
- 2. 물품검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제254조의2제5항, 제256조의2제3항 및 제257조
- 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1. 전자상거래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 2. 전자상거래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 3. 제7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264조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 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

제267조제1항 중 "무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 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제1호에 따른"으로,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 가. 제38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
 -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 다. 제2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 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5천만원

- 나. 물품원가
- 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
 -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물품가격
 -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가격을 말한다)

제27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
- ②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 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 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제2항제4호 중 "제275조의3제2호"를 "제275조의3제1항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277조제6항제2호 중 "제38조제3항"을 "제38조제4항"으로 한다.

제322조제12항 중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절차"를 "통계자료,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로 한다.

제322조의2제4항 중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각 항 중 "연구개발비"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 및 같은 조 제2항·제6항·제7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327조의2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정보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관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을 "제222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3항·제5항에 따른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29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1.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 2. 제222조제1항제7호 및 제254조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 3.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 제2조(성실납세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국가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에 관한

- 적용례)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보세창고의 장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창고에 장치한 물품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장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5조(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2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제6조(수출입신고필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제1항 단서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 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 다.
- 제7조(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부 등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장 부 등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한 경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

- 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의 가산 세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내국운송 신고 대상 내국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한 내국 물품의 장치 장소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로서 2026년 1월 1일 당시 그 등록의 유효기간(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에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의2의 제목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 |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u> <신 설></u> |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 |
| | 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 |
| | <u>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u> |
| |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 |
| | 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 |
| | 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 |
| | 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 |
| | 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
| |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 |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
| 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 | |
| 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 | |
| 반출입신고, <u>보세운송신고를 하</u> | <u>보세운송신고를 한</u> |
| 거나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 |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
| 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 |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
| 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 <u>자료</u> |
|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 |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 | |
| 게 작성하여 <u>신고 또는 자료를</u> | <u>신고일 또는 자료 제</u> |
| <u>제출한 날</u> 부터 5년의 범위에서 | 출일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 |
|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 | |

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전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 ②·③ (현행과 같음) |
|--------------------|
|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
| |
| |
| |
| <u>다음 각 호의</u> |
| 다음 각 호의 |
| |
| |
| |
| |
| |
| |
| |

② ~ ④ (생 략)

제38조(신고납부) ① · ② (생 략) 제38조(신고납부) ① · ② (현행과

<신 설>

③ • ④ (생 략)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략)

<u><신 설></u>

<u>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u> 은 경우: 10년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신고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세관장은 세액심사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 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 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u>⑥</u> ----- <u>제5</u> <u>항</u>-----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8조의5(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① 성 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 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 외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다시 한꺼번에 납세신고 (이하 이 조,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제1항에서 "성실납세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사등이 수입신고서에 적힌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기획재정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성실납세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신고 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할 수 있 으며, 납세신고를 한 후에 그 세 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5항에 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세신고한 세액 을 정정할 수 있다.

제38조의5 (생략)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 제39조(부과고지)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 장이 관세를 부과 · 징수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략) ②·③ (생 략)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 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 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 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 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 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성실납세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8조의6 (현행 제38조의5와 같 유)

- ---- 제38조 및 제38조의5---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 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 가 성실납세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성실납세신고한 내용 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 경우
 - 7. (현행 제6호와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2조(가산세) ① ------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 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 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 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 세로 징수한다.

1. • 2.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보세의 자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의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③ 세관장은 제16조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 ·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제5항 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 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

| · 1.·2. (현행과 같음) |
|---------------------|
| (2) |
| <u> </u> |
| |
| |
| |
| |
| |
| |
| |
| |
| <u>100분의 60</u> |
| |
| |
| ③ |
| |
| |
| |
| |
| |
| |
| |

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 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에는 100분의 40)
- 2. (생략)
- ④ ~ ⑦ (생 략)
-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저
 - ① · ② (생략)
 -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u>개발도상국</u>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 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 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1 |
|---------------------|
| |
| |
| <u>100분의 60</u> - |
| 2. (현행과 같음) |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세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3 |
| 개발도상국[최빈 개발 |
| 도상국에서 제외(2025년 4월 1 |
| 일 전에 제외된 경우를 포함한 |
| 다)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 |
| 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 |
| <u>가를 포함한다]</u> |
| ④ (현행과 같음) |
| 세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
|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
| |
| |
| |
| |
| |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신 설>

<신 설>

| 1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
|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 |
| <u>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u> |
|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
| <u>조에서 같다)</u> <u>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u> |
|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
| <u> </u> |
| 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 |
|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 |
| |

<신 설>

- 2. (생략)
- ② ~ ⑥ (생 략)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① (생 략)
- ②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 할 수 없다.
- 1. ~ 4. (생 략)
- 5. 그 밖에 <u>탈세혐의가 있는 자</u> 에 대한 <u>일제조사 등</u>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35조(입항절차) ① 국제무역선 기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

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장소 다. 통관우체국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 | |
| | |
| | |
| | |
| 1 4 / 됬 | 케크 기수 |

- 1. ~ 4. (현행과 같음)
- 5. ---- <u>제1호부터 제4호까지</u> <u>와 유사한 경우로서</u> -----

| 제135조(입항절차) ① |
|---------------|
| |
| <u>입항하려는</u> |
| |

여 <u>지체 없이</u> 세관장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 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 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 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 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 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136조(출항절차) ① 국제무역선 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 ⑤ (생 략)
- 제140조(물품의 하역) ① ~ ④ (생 략)
 - ⑤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 (이하 "하역통로"라 한다)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⑥·⑦ (생 략)

|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 |
|---|--------------------|
| | 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 | 136조(출항절차) ① |
| | |
| | |
|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
| | <u>에 따라 세관장</u>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 | 140조(물품의 하역) ① ~ ④ |
| | (현행과 같음) |
| | ⑤ |
| | |
| | |
| | |
|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
| | <u>따라 제한</u> |
| | ⑥·⑦ (현행과 같음) |

- 제155조(물품의 장치) ① <u>외국물</u> 품과 제221조제1항에 따른 내국 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 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 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6. (생략)
 - ② (생략)
-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 <u>⑥</u>·<u>⑦</u> (생 략)
-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u>「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u>

| 제155조(물품의 장치) ① <u>외국물</u> |
|------------------------------------|
| <u>卫</u>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
|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 |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
| 조치의 세부기준은 기획재정부 |
| 령으로 정한다. |
| <u>⑦</u> · <u>⑧</u>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
| 같음) |
|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 ① |
| |
| <u>다음 각</u> |
| 호의 기업 |
| |
| |
| |
|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 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 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 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 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 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 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u><신 설></u>

<신 설>

- ② (생략)
-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

| <u>_</u> |
|------------------------|
| ·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
| |
| 따른 중소기업 |
| |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
| 게거 기ᅱ시 기ᅱ E 버버 |
| <u> 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u> |
| 게9ㅈ게1중세 메ㄹ 즈거기어 |
|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 ② (현행과 같음) |
| 少(ごづり 乍口) |
| ③ |
| (|
| |
| |
| |

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 가 만료되는 <u>경우(제6항에 따라</u> <u>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에도 또한 같다.

④ ~ ⑧ (생 략)

- 제177조(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 저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생 략)
 -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 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단서 신설>

다. (생 략)

- 2. (생략)
- ② (생략)
-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 전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 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 , |
|-------------------|
| <u>경우</u> |
| |
| |
| ④ ~ ⑧ (현행과 같음) |
| 제177조(장치기간) ① |
| |
| <u>.</u> |
| 1 |
| |
| 가. (현행과 같음) |
| 나 |
| |
| |
| <u>기간.</u> 다만, 세관 |
|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
|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다. (현행과 같음) |
| 2.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
| 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
| |
| |
| |

- 1. (생략)
- 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나. (생 략)

다. 제235조에 따른 <u>지식재산</u> 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 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 반한 경우

라. • 마. (생 략)

- ②·③ (생 략)
- 제209조(통고) ① 세관장은 제208 조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u>매</u> <u>각하려면</u>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 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② (생 략)

<신 설>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 1. (현행과 같음) |
|---------------------------------|
| 2 |
| 가.·나. (현행과 같음) |
| 다 지식재산 |
| <u>권 등</u> |
| |
| |
| |
| 라.•마. (현행과 같음) |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209조(통고) ① |
| <u>प</u> रे |
| 각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
| 에 따라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221조(내국운송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
| 사항 외에 내국운송의 방법과 |
|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
| 및 보고) ① |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 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 여야 하다.

- 1. ~ 6. (생 략)
-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
- ② ~ ⑤ (생 략)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① ------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 지식재산권 등-----

| |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 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렁으로 정한다.
 -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원료물질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 정된 임시마약류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 를 제외하고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 6. (생 략) <u><신 설></u>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 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 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 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 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 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 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 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 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 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

| 1. ~ 6. (현행과 같음) |
|------------------|
|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
|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 |
| 산업기술"이라 한다) |
| ② |
| <u>지식재산권 등</u> |
| |
| <u>지식</u> |
| 재산권 등 |
| |
| <u>지식재산권 등</u> |
| |
| ③ |
| |
| <u>지식재산권 등</u> |
| |
| 지식재산권 등 |
| |
| |
| |
| |
| |
| |
| , |
| |

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 6. (생략)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u>지식재</u> 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 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 청할 수 있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수 있다.

1. ~ 6. (생 략) <u><신 설></u>

| 1 |
|----------------------------|
| 1. ~ 6. (현행과 같음) ④ 지식재 |
| <u> </u> |
| <u> 산권 등</u> |
| |
| |
| |
|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 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 |
| 된 물품 |
| <u>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u> |
| <u>방위산업기술</u> |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u>지식재산권</u>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통보하여야 한다.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생 략) 저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 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

|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 |
|----------------------------|
| 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
| <u>방위산업기술</u> |
| 6 |
| <u>지식재산권 등</u> |
| |
| |
| |
| |
| ⑦ |
| |
| <u>지식재산권 등</u> |
| |
| |
| |
| |
| |
| |
| |
| |
| |
| ll 1246조(물품의 검사) ① (현행과 |
| 같음) |
| ② |
| |
| <u>검사방법, 검사 장비·</u> |

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48조(신고의 수리) ① 세관장 제 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 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 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 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 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 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 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 통관 등) ① 관세청장은 전자상 거래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 고 · 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징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 | 수 있다. 우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

| |
|-------------------|
| 하여 필요한 사항 |
| ③ (현행과 같음) |
| ∥248조(신고의 수리) ① |
| |
| |
| |
| |
| |
| |
| |
| |
| |
| <u>신고인(신고 명</u> |
| 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
| 화주를 포함한다) |
| ②・③ (현행과 같음) |
| 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 |
| 통관 등) ① 전자상거래물품 중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 |
|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 에 따라 수출입신고·물품검사 |
|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자(국내에 주

시설 및 검사인력 양성 등에 관

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에게 전자상거래 물품의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의 제공 방법·절차 등 정보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 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 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⑤ 제1항은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전자상거래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 3. 화주의 위임을 받아 국외에 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 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 ③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상 거래업자등에게 전자상거래물품의 주문·결제 등과 관련된 거래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입 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

- 의 제공 방법·절차 등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⑤ 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화주에게 전자상 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 런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⑥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 1. 수출입신고에 관한 사항의경우: 제254조의2제1항 및 제258조제2항
- 2. 물품검사에 관한 사항의 경수: 제254조의2제5항, 제256조의2제3항 및 제257조
- ⑦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 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등록은그 효력을 상실한다.
- 1. 전자상거래업자등이 폐업한경우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저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267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 게 <u>무기</u>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 2. 전자상거래업자등이 사망한 |
|----------------------|
|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
| <u>경우)</u> |
| 3. 제7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 |
| 간이 만료된 경우 |
|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
| 범위)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 |
| 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 |
|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
| 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 |
| 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 |
| 세267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
| |
| |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 |
| 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 |
|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비, 장구, |
|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

"무기등"이라 한다)----.

- ② 제1항 및 제3항에서 "무기"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 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 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 격기를 말한다.
- ③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 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 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 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 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 다.
-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 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 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 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1.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

집행법 | 제10조 및 제10조의2 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 다.

<삭 제>

|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u>제1호에</u> |
|----------------------------|
| <u> 따른</u> |
| |
| |
| |
| |
| |
| <u>제2호에 따른</u> |
| |
| <u>.</u>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른 보정신청

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 신고 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

<u>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u> 따른 보정신청

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u>다. 제241조제1항 · 제2항에 따</u> 른 신고

<u>라.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u> 고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높은 금액

가. 5천만원

나. 물품원가

<u>다. 다음 1) 및 2) 간의 차액</u> 1)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한 물품가격

2) 과세가격(제241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

- 3.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 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
-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는 강 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 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 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 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 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
 - 2. (생략)
 - <신 설>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
-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 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
 - 2. (현행과 같음)
 - ②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 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또 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 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 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 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의2. • 5.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 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 략)
- 5. <u>제38조제3항</u>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6. (생략)
- ④·⑤ (생 략)

|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
|-----------------------|
| ② |
| |
| |
| <u>.</u> |
| 1. ~ 3. (현행과 같음) |
| 4 |
| |
| |
| |
| 제275조의3 |
| 제1항 각 호 |
| |
| 4의2.·5. (현행과 같음) |
| ③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 — . , — , . |
| 5. <u>제38조제4항</u> |
| |
| |
| 6. (현행과 같음) |
| ④·⑤ (현행과 같음) |

- 제277조(과태료) ① ~ ⑤ (생략)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2. 제38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7조제3항, 제135조제2항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3 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 제5항. 제141조제1호 · 제3호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 항, 제158조제2항 · 제6항, 제 172조제3항, 제194조(제205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 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 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 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216조제2항 · 제3항(제 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 제277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
|-----------------------|
| 같음) |
| ⑥ |
| |
| |
| 1. (현행과 같음) |
| 2. 제38조제4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제221조제1항, 제222조제 3항. 제225조제1항 후단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 7. (생략)

(7)・(8) (생 략)

-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① ~ ⑪ (생 략)
 - ① 세관사무에 관한 증명서, 제 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 및 제4항에 따른 통계 의 열람 또는 교부 절차와 제10 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의 제 공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 ③ (생 략)
 -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 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_ | — | _ | _ | _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 |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7. (현행과 같음)
- (7)·(8) (현행과 같음)

및 교부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 통계자료, | 제4항에 | 따른 | 통계의 |
|-------|------|----|-----|

열람 또는 교부 절차, 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 발혁신법 |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 법」 제13조 각 항 중 "연구개 발비"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 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7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 ~ ① (생 략) <<u>신 설></u>

<신 설>

위탁) ① ~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46조제1항에따른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관세청장"으로 본다. |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 립) ① ~ ⑪ (현행과 같음) ① 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정보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 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 세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 제222조제 1항·제3항·제5항 및 제246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

게 위탁할 수 있다. <u><단서 신</u> <u>설></u>

- 1. ~ 4. (생략)
-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 1. (생략)
- 2.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접수 및 보완 요구
- <u>3</u>. · <u>4</u>. (생 략)

| 다만, 제 |
|---------------------|
| 222조제1항·제3항·제5항에 따 |
| 른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
|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
| <u>한다.</u> |
| 1. ~ 4. (현행과 같음) |
| ⑤ |
| |
| |
| |
| <u>.</u> |
| 1 케1C도고케1청k에 메르 ㅂ세시 |

- 1.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
- 2. (현행 제1호와 같음)
- <u>3</u>. ----- <u>지식재</u> <u>산권 등</u>-----
-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같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O 수입 : +795억원

| | | | | | | T | |
|--------|--|------|------|------|------|------|------|
| 구 : | 연 도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합계 |
| 지출 | 지출수반요인 없음 | | | | | | |
| | 소 계(a) | | | | | | |
| | 월별 성실신고확인 제도 도입 (안 제9조제4항, 안 제38조의5 등) | | 추 | 정 | 곤 | 란 | |
| | 수입 무신고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 신설(안 제21 조제1항) | | 추 | 정 | 곤 | 란 | |
| 수입 | 최빈 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안 제76 조제3항) | | 추 | 정 | 곤 | 란 | |
| |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안 제42조) | +159 | +159 | +159 | +159 | +159 | +795 |
| | 소 계(b) | +159 | +159 | +159 | +159 | +159 | +795 |
| 총비 | 8 (a-b) | △159 | △159 | △159 | △159 | △159 | △795 |

Ⅱ.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
| | 제9조제4항 | |
| 1 | (관세의 납부기한 등), 제38조의5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신청한 경우 관세사등의 세액검증을 통해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해지므로 세수증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시 행 첫해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른 세수이연으로 세수감이 발 생하게 됨 |

| | 특례) 등 | |
|---|---------------------------|---|
| 2 | 제21조(관세의 부과제척기간) | 관세 무신고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신설됨에 따라 무신고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추가 세수 확보 가능하므로 세수 |
| | | 증 효과가 발생함 |
| 3 |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졸업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에도 적용함에 따라 관 세 세수가 감소하게 되어 세수감 효과가 발생함 |
| 4 | 제42조(가산세) | 부정행위시 관세 가산세율을 상향함에 따라 관세 세수가 증 가하게 됨에 따라 세수증 효과가 발생함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 연 번 | 조·항(조제목) | 추계여부 |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
|-----|--------------|------|------------------------------|
| | 제9조제4항(관세의 | | |
| | 납부기한 등), 제38 | | |
| | 조의5 | |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중 확인제도 신청이 예 |
| 1 | (| X | 상되는 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으므로 |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 | 추계 곤란 |
| | 자의 성실납세신고 | | |
| | 특례) 등 | | |
| | 제21조(관세의 | v | 적발되지 않은 관세 무신고행위 규모를 사 |
| 2 | 부과제척기간) | X | 전에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
| | 제76조 | | 최빈개도국 졸업국가의 범위는 국제연합 총회 |
| 3 | (일반특혜관세의 | X | (매3년, '24년말 예정)에서 결정됨에 따라 적용 |
| | 적용기준) | | 국가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
| 4 | 제42조(가산세) | 0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O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24.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 된다는 전제 하에 작성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1)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안 제42조)
- ㅇ 세수증: +795억원
 - '19~'23년 신고불성실 가산세 실적 평균에 대해 가산세율을 상향(40—60%)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를 추계함
 - 318억원 × {(60% 40%)/40%} × 5년 = 795억원

IV. 부대의견

- ㅇ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 ㅇ 아래 개정조문은 비용수반요인 없음
- 적재화물목록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의무자 변경(안 제12조제1항)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지정 반입장소 추가(안 제106조제1항제1호)
-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藏置) 의무 폐지(안 제155조제1항)
-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藏置)기간 연장(안 제177조제1항제1호나목)
-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신설(안 제234조의2 신설)
- 지식재산권등 보호규정에 방위산업기술 추가(안 제235조)
- 수출입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안 제248조제1항)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절차 신설(안 제254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
-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확대 및 특별통관 우선적용 규정에 검사방법 추가(안 제254조제3항 및 제6항)
-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안 제264조의2)

-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등 범위 정비(안 제267조)
-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270조의2)
-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안 제275조의3)
- 업무 민간위탁 근거 정비(안 제329조제4항)

V. 작성자

O 성명

| 주무관 | 사무관(서기관) | 과장 | 실장·국장 |
|-----|----------|-----|-------|
| 김선화 | 정지운 | 김영현 | 이형철 |

O 대표연락처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정지운 | 044-215-4411 | jiun.chung@korea.kr |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O 해당없음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O 해당없음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및 세원 양성화 노력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IV. 부대의견

O 해당없음

V. 협의사항

| 협의시점 | 협의기관 |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
|------|------|----------------|
| 해당없음 | | |

Ⅵ. 작성자

O 성명

| 주무관 | 사무관(서기관) | 과장 | 실장・국장 |
|-----|----------|-----|-------|
| 김선화 | 정지운 | 김영현 | 이형철 |

O 대표연락처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 정지운 | 044-215-4411 | jiun.chung@korea.kr |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